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06

대 전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1구합102446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원 고	○○○○○○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 고	○○○○○○시장
변 론 종 결	2022. 6. 8.
판 결 선 고	2022. 9. 21.

주 문

1. 피고가 2019.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각 가산세 합계 24,978,2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06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의 ○○지사는 2015. 6.부터 2019. 4.까지 물, 증기 기타 열매체를 수송 또는 분배하는 각 열수송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열수송관'이라 한다)을 아래 [표]와 같이 9회에 걸쳐 취득하면서, 지하에 매설된 이중보온관의 손상으로 인한 보온재 수분침투 여부 및 수분침투의 위치 모니터링을 위하여 열수송관 감시시스템을 설치·운영하였다.

나. 이러한 열수송관 감시시스템은 유선중앙감시장치[1], 무선중앙감시장치[2], 열수송관 감시정보통합서버[3], 판넬[4], 테스트 포인트(T/P)[5], 유선열수송관감시장치, 무선열수송관 감시장치[6], 무선열수송관감시장치RF[7], 인출선(케이블)[8](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감시장치'라 한다)로 이루어져 있다.

다.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열수송관 등을 설치한 이후 이에 관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감시장치 중 판넬, 테스트 포인트(T/P), 무선열수송관 감시장치, 무선열수송관감시장치RF, 인출선(케이블)(이하 통틀어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별도의 기계장치로 보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1) 유선열수송관감시장치에서 전송된 보온재의 수분침투상태 및 감지선 단선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고, 데이터를 축적하여 통계, 추이관리 및 분석하는 장치
2) 무선 열수송관감시장치에서 전송된 보온재의 수분침투 상태 및 감지선 단선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고, 데이터를 축적하여 통계 추이관리 및 분석하는 장치
3) 원고의 지사별로 설치된 유선, 무선중앙감시장치에서 취득된 감시정보를 전사 차원에서 취합 및 통합하여, 취득된 정보를 총괄적으로 분석하고 그 추이를 관리하는 서버
4) 열수송관 상태 감시 정보를 통신망을 이용하여 중앙감시장치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감시장치(CDMA, RF)를 보관하는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로서 감시장치와 인출선을 연결해 둔 시설물
5) 지상에서 열수송관 내 보온재의 절연저항 및 절연 결함 위치를 측정할 수 있도록 열수송관 인출선과 연결해 둔 지상의 시설물
6) 열수송관 보온재의 수분침투상태 및 감지선 단선여부 등을 측정하고, 무선열수송관감시장치RF에서 취득한 정보를 포함하여 중앙감시장치로 전송하는 장치(CDMA)
7) 열수송관 보온재의 수분침투상태 및 감지선 단선여부 등을 측정하는 장비이나, 무선열수송관감시장치와 다르게 통신기능(취득한 정보를 중앙감시장치로 전송하는 기능)이 없어 취득한 정보를 통신기능이 확보된 무선열수송관감시장치로 전송하는 장치
8) 열수송관 내 설치된 감지선이 감지한 열수송관의 누수 등의 신호를 '테스트 포인트' 또는 '판넬 내 감시장치'에 전송할 수 있도록 지상까지 연결된 케이블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06

[표]

순번	취득 내역	취득일 (신고일)	이 사건 물품 취득가액(원)	이 사건 물품 관련 취득세(원) (가산세 포함)
1	2014년 ○○지사 열배관 공사 (부분 준공2차)	2015. 6. 5. (2015. 7. 30.)	7,233,608	150,420
2	○○시 2생활권 열배관 공사	2015. 11. 5. (2015. 12. 30.)	481,486,468	9,728,090
3	2014년 ○○지사 열배관 공사 (최종준공)	2015. 12. 1. (2016. 2. 1.)	288,293,034	5,793,260
4	2015년 ○○지사 열배관 공사 (최종준공)	2017. 4. 1. (2017. 5. 30.)	229,874,965	6,411,500
5	2015년 ○○지사 열배관 공사 (2~4생활권 열수송관 이설공사)	2017. 4. 1. (2017. 5. 30.)	633,187	17,640
6	2015년 ○○지사 열배관 공사 (1~3생활권 맨홀 환기구 이설)	2017. 4. 1. (2017. 5. 30.)	3,783,602	105,500
7	○○시 공동구 2단계(3차구간) 열배관 공사	2018. 4. 20. (2018. 6. 11.)	9,986,786	254,510
8	2017년 ○○지사 남부권 열수송관 공사	2018. 10. 1. (2018. 11. 26.)	91,935,793	2,248,890
9	○○시 복합편의시설 열수송관 이설공사	2019. 4. 16. (2019. 6. 14.)	11,478,460	268,410
합계			1,124,705,903	24,978,220

라. 피고는 2019. 8. 7.부터 2019. 8. 26.까지 원고의 ○○지사에 대하여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감시장치 중) 이 사건 물품의 취득가액을 이 사건 열수송관의 취득세 신고 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2019. 8. 26. 원고에게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19,564,410원(각 가산세 포함)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9. 9. 25.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06

10. 17. 원고의 청구를 불채택하고 2019. 10. 18. 원고에게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24,978,220원(각 과소신고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2. 25.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물품은 부동산(도관시설)인 이 사건 열수송관에 부수되는 시설이 아닌 이와는 구별되는 별도의 기계장치이고, 지방세법에 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는 기계장비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이 이 사건 열수송관의 부수시설[9]임을 전제로 하여 그 취득가액을 이 사건 열수송관에 관한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지방세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9) 붙박이 가구·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시설 등의 설치비용[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8호]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06

의3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고 한 것이므로,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그에 부합되거나 부수되는 시설물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라면 그 설치비용 역시 당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된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두1600 판결).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갑 제3 내지 5, 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물품은 구 지방세법(2019. 12. 3. 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호, 제5조 제4호, 제10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8호의 '붙박이 가구·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물품이 이 사건 열수송관 자체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어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물품은 판넬, 테스트 포인트(T/P), 무선열수송관감시장치, 무선열수송관감시장치RF, 인출선(케이블)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이 사건 열수송관 내의 감지선과 지상의 장치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인출선(케이블)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06

상에 위치하여 있는바(반면 이 사건 열수송관은 지하 2.5 내지 3m 정도 아래에 매설되어 있다), 이 사건 열수송관에 고정되어 있는 시설이 아니어서 훼손 없이 이 사건 열수송관에서 분리할 수 있고(감지선과의 연결을 끊음으로써 가능하다), 분리 시 과다한 비용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원고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분리, 철거 및 재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②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물품 중 보관 상태가 양호한 판넬이나 테스트 포인트(T/P)의 경우 이를 분리하여 다른 열수송관에 재사용하기도 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을 회계상 기계장치(비유동자산)으로 계상하고 12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함으로써 그 효용가치를 열수송관과 별도로 평가하고 있다.

④ 부동산인 열수송관은 지하에 매설되는 기반시설이므로 통상 택지조성공사 당시 도로계획에 따라 비포장 상태의 도로 예정지에 매설하게 되는 반면, 이 사건 물품과 같은 감시시스템 구성 물품들은 위와 같은 택지조성공사에 따라 도로 및 보도 조성이 완료된 이후에 그 필요 여부에 따라 지상에 별도로 설치되기 때문에 그 시공시기가 동일하지 않다. 이 사건 물품의 경우, 현장 여건에 따라 그 설치 시점과 설치 여부가 달랐고, 설치 업체도 동일한 경우도 있으나 다른 경우도 있었다.

나)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물품은 이 사건 열수송관과 별개의 용도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므로, 이와 독립하여 별도의 거래상 객체가 되거나 경제적 효용을 가질 수 있다고 보인다.

① 이 사건 열수송관은 물, 증기 기타 열매체를 수송 또는 분배하는 것을 주된 용도와 기능으로 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물품이 포함된 이 사건 감시장치는 열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06

송관의 누설을 감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② 열수송관(열배관)의 설치상태, 누설 여부 및 보온재 손상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육안검사, 열수송관 감시시스템, 그리고 열화상카메라 검사 등의 여러 검사기법이 활용될 수 있는데(집단에너지사업법 제23조 제1항 및 제3항,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제38조 등), 원고는 그 중 열수송관 감시시스템을 선택하여 이 사건 감시장치를 설치한 것이고, 이 사건 물품은 그 일부이다. 이와 같이 원고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럿 있는 관계로 원고가 전국에 설치·운영중인 열수송관들 중에는 열수송관 감시시스템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10].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10)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은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21. 1. 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216호로 개정되어 지역냉난방사업의 경우 감시시스템을 활용하여 열매체 누설여부를 확인하고, 감시시스템으로 확인이 불가하거나 누설이 의심되는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육안 및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하여 확인하도록 변경되었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06

별지

관련 법령

■ 구 지방세법(2019. 12. 3. 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4. 1. 1.>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06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④ 제7조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06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⑥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06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4. 기계장비: 기계장비의 종류별·톤수별·형식별·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기계장비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10.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 종류별 신축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시설의 용도·구조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 그 가액에 다시 시설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11.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종류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거래가격 및 설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시설물의 용도·형태·성능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 그 가액에 다시 시설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제11호에 따른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하 이 항에서 "시설물"이라 한다)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할 때 그 시설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함께 쓰이고 있는 건축물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 부분의 점유비율에 따라 제1항제11호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나누어 적용한다.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수·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배수시설, 복개설비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06

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06

③ 법 제10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④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자가 법 제1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해당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의 합(이하 이 항에서 "실제 지출금액"이라 한다)이 분양·공급가격(분양자 또는 공급자와 최초로 분양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간 약정한 분양가격 또는 공급가격을 말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자의 실제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한 취득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제1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제3항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
2. 제3항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증명된 금액
3.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06

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금융회사등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끝.